



'청탁금지법'

왜 바뀌나요?

자연재해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
농·축·수산업계, 문화·예술업계 등을 위해

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
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(2023.8.30)을
하였습니다.





'청탁금지법'

어떻게 바뀌나요?

1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

기존	현재
10만원 (설날·추석 20만원*)	15만원 (설날·추석 30만원*)

*선물 가액이 상향되는 올해 추석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.

2 물품 및 용역상품권도 선물에 포함

기존	현재
물품만 가능	물품+물품·용역상품권





물품·용역상품권

어떤 것이 있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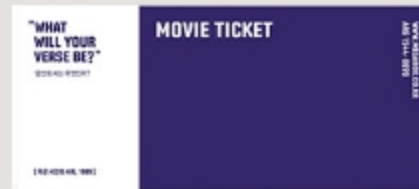
온라인·모바일 상품권

(기프트콘 등)



문화관람권

(연극·영화·공연·스포츠 등)



금액상품권은 제외

(백화점상품권 등)

